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38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이광희·채현일·박지원

이상식 • 양문석 • 김문수

이재강 · 민병덕 · 김 윤

송재봉·김우영·복기왕

윤종군 • 박해철 • 이병진

안태준 • 박상혁 • 박정현

임호선 의원(19인)

찬 성 자: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24,6.27, 2023헌바78).

이에,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1조 본문 중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후보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51條(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	第251條(候補者誹謗罪)
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説・放送・新聞	
・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	
을 摘示하여 <u>候補者(候補者가</u>	<u>후보자</u>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	
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	
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	
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	
니한다.	